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2784 판결 [건물등 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하천 23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지상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ㄱ’ 부분 창고 16.5㎡, ‘ㄴ’ 부분 창고 1.8㎡, ‘ㄷ’ 부분 바닥 콘크리트 15㎡, ‘ㄹ’ 부분 담장 20m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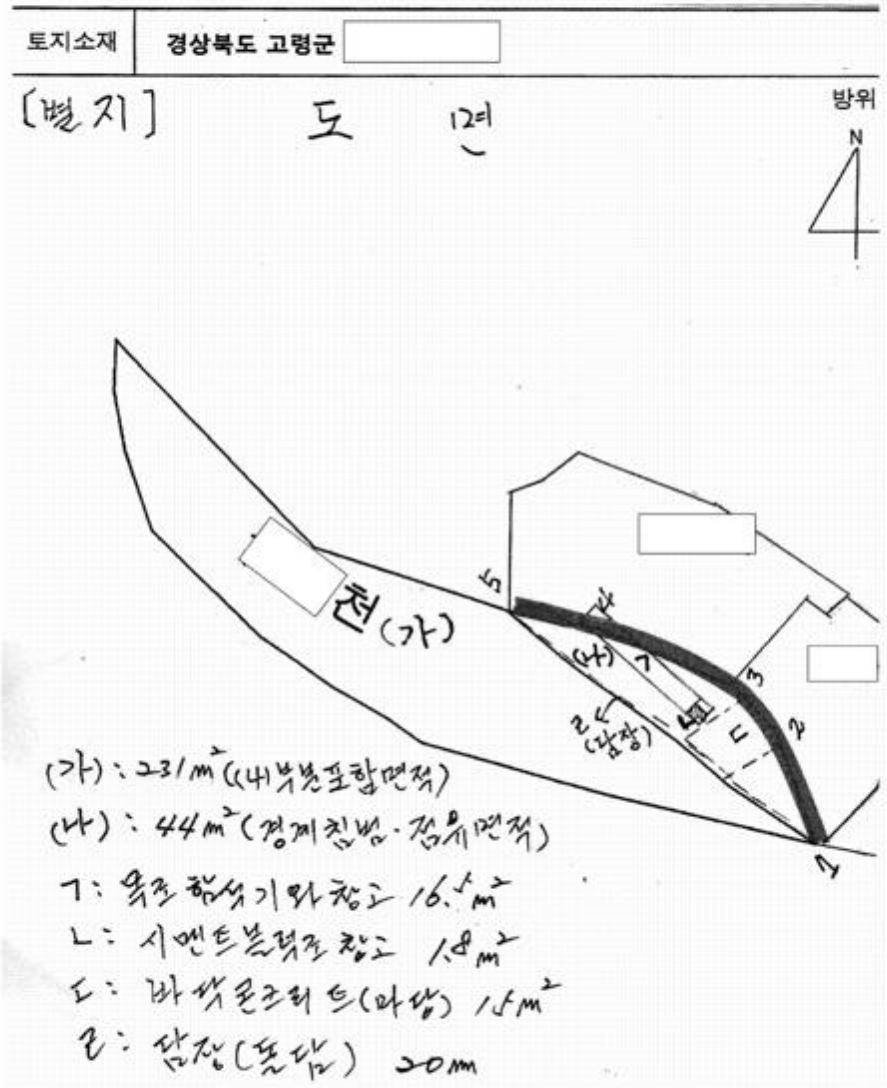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박영순

[별지1]

도면



[별지2]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경북 고령군 C 토지 231㎡는 2015. 3. 24.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
2. 그런데 2021. 5. 10.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령지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결과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 없이 그 소유의 경북 고령군 D 및 E의 대지에 인접해 있는 위 제1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토지 및 지상에 지장물(시설물 등)인 목조 함석기와지붕 단층창고 16.5㎡, 시멘트블럭조 창고 1.8㎡, 마당 바닥콘크리트 15㎡, 담장(돌담) 20m 등을 점유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합리적으로 원만히 협의코자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로서는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사용 중인 지상물(시설물 등)로 인하여 본인 토지 이용에 따른 소유권 확보 및 권리행사가 제한됨에 따른 손실 생 등으로 부득이 위 토지 중 경계침범한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토지의 지상 지장물(시설물 등)인 목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창고 16.5㎡, 시멘트블럭조 창고 1.8㎡, 마당 바닥콘크리트 15㎡, 담장(돌담) 20m 등을 철거 및 위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44㎡를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 원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청구취지 기재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